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7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 1. 13.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변경에 따라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 및 문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2조)

다.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 확대(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1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9. 16. ~ 2022. 10. 6.):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5항 및 제8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의제5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촉해제 되었”을 “해임되었”으로, “위촉된”을 “임명된”으로, “위촉일”을 “임명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촉 및 위촉 해제”를 “임명 및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통장 및 반장의 위촉)”을 “(통장 및 반장의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제)”를 “(통장 및 반장의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 또는 동장”을 “동장”

으로, “위촉해제 하여야”를 “해임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촉해제 한다”를 “해임한다”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구청장”을 “동장”으로, “위촉한”을 “임명한”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장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위촉 해제된”을 “해임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장신분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은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의제5항 및 제12조제1항----- ----- ----- ----- ----- ----- ----- ----- ----- -----.</p>
<p>제4조(통장의 임기) ①·② (생략) ③ 통장이 임기만료 전 <u>위촉해제</u> 되었을 때 새로 <u>위촉된</u> 통장의 임기는 <u>위촉일</u>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통장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해임되었</u>----- <u>임명된</u> ----- ----- <u>임명일</u>----- -----.</p>
<p>제5조(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동장은 통장의 <u>위촉</u> 및 <u>위촉 해제</u>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u>포함하여</u> 7명 이내로 구성한다.</p>	<p>제5조(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u>임명</u> 및 <u>해임</u> ----- ----- ----- -----. ② ----- ----- <u>포함하되</u> <u>성별을</u> <u>고려하여</u> --.</p>

③·④ (생략)

제6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 ①
(생략)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하며, 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
이 위촉한다.

1. ~ 3. (생략)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서 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제7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제)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
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
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해
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
터 제7호까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 심사를 거쳐 위촉해제 한다.

1. ~ 7. (생략)

제14조(통장신분증 발급) 구청장
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임명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 임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 및 반장의 해임) 동장

----- 해임하
여야 ----- . -----

----- 해임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14조(통장신분증 발급) 동장--
----- 임명한 --

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통장신분증의 규격·기재사항 및 사용·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장학생의 자격) (생략)

<신설>

제22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임기만료, 전출, 사직 등으로 통장 직에서 위촉 해제된 때
2. (생략)
- ② (생략)

-----.

-----.

제16조(장학생의 자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통장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22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

-----.

1. -----

-- 해임된 -----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문 본문의 변경 등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수정(안 제16조)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지만 추가 예산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성 명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담당자: 행정8급 이지훈)
연락처	02-2600-670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28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통보(조치)일		2022. 9. 2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 1. 13.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변경에 따라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 및 문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2조)
- 다.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로 변경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 확대(안 제16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28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지훈	전화번호 02-2600-6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19일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 1. 13.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input type="radio"/>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및 자문단을 구성할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참고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5조(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생략)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④(생략)	제5조(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생략)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 되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④(생략)	종합검토의견 참고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5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자치행정과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